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0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	10
참고 1.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7.
3. 회부연월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겪는 것이 주저 안정임.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7.9%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자 중 국가장학금 외 16.1%가 한

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②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¹⁾은 채무자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이 상환기준

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2025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1호) [7] 이자면제 대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아래와 같다.

-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

자격명	학자금지원 구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채무자 본인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 포함

※가구원 기준, 자격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기별 한국장학재단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정 범위를 따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15.7.1.시행, 현재의 학자금지원 5구간에 해당)이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의 기준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로 한다.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²⁾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도록 규정하면서,

「아동복지법」 제38조³⁾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과 함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인원 >

2)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3)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참고 1.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19~'23년	9,970명	3,838명	767명	5,360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이하 “자립준비대상자”라 함)을 매년 2,000여명 규모로, 이들의 2023년도 대학진학률은 69.7%(2020년 대비 7%p 상승)로 파악하고 있음.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진학자들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83.6%)과 학자금 대출(16.1%)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휴학·중퇴 등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3%, 27.9%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자립준비대상자들의 고등교육의 포기는 학력에 따라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면 외에도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립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수준 >

구분	계	고교 재학이하	고교 휴학중퇴	고교 졸업	23년제 재학중	23년제 휴학중퇴	23년제 졸업	4년제 재학중	4년제 휴학중퇴	4년제 졸업	대학원 이상
2023	100	0.9	1.8	27.6	6.1	7.6	20.6	10.2	4.3	19.9	1.0
2020	100	1.8	2.6	32.8	10.5	6.3	16.8	11.1	4.4	12.9	0.7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계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기타
100	4.0	51.2	11.3	5.8	14.6	8.8	4.3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교육부고시 등 관계 법령과 “자립준비청년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22.11.)”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음.

<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현황 >

(단위: 명, 백만 원)

대상	구 분		지원기간	인원 (A)	공급 금액 (B)	1인당 (C=B/A)	이자면제에 따른 재정소요 (D=B*3.42%*7/12)
자립준비 청년	등록금	기초·차상위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60	410	2.56	-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81	112	1.38	
		6~10구간	이자 지원 없음	8	17	2.16	
	생활비	전구간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476	2,388	4.11	
	합계(등록금+생활비)			506	2,928	5.8	
학자금 지원 구간	등록금 생활비	기초·차상위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215,385	235,088	1.09	4,690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6~10구간	이자 지원 없음				
군복무자 다자녀 상환 유예자	등록금·생활비		군 복무기간	26,342	40,401	1.53	806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63,886	445,113	2.72	8,880
			상환유예기간	24,123	64,762	2.68	1,292

자료: 교육부

그러나 일부 소득구간(6~10구간)에 해당되는 자립준비대상자의 등록금 이자면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개정안은 모든 자립지원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 사유로 대학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그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산액은 연간 약 25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바, 재정상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지원 사항과 개정안 간 비교 >

구분	현행 지원 내용 ⁵⁾				개정안
주요 지원 내용	대상	자립지원대상자는 전체 소득구간 ^(~10구간) ICL 지원			자립지원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등록금	지원대상 + 이자 면제 대상은 아님 다만, 소득에 따라 이자면제			이자면제 ^{기준소득발생 시까지}
		소득구간	이자면제	인원	
		기초차상위	기준소득발생 시까지	160명	
		1~5구간	졸업후 2년 이내	81명	
		6~10구간	이자면제 없음	8명	
개정에 따른 수혜자 89명					
생활비	지원대상 + 전체 소득구간 이자면제 ^{기준소득발생시까지}			이자면제 ^{기준소득발생 시까지}	

자료: 교육부

5)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지원 대책, '22. 11.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 개정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
으로,

향후 법 취지에 따라 기초·차상위 등 다른 이자면제 대상자와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고시 등 관련 법령에 자립지원대상자와 관
련한 이자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겠음.

문 의 처
02) 6788-5193

□ 참고 1.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1) 경제적 지원

-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다담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 *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 ▲지급기간 확대 : 보호종료 후 2년('19.4월) → 3년('20.1월) → 5년('21.8월)
 - ▲지급액 인상 : 월 30만 원('19.4월) → 35만 원('22.8월) → 40만 원('23.1월) → 50만 원('24.1월)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 ▲지급액 인상 권고 : 1인당 500만 원('21) → 800만 원('22) → 1,000만 원('23)
 -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24)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2.6.22.시행)
 - *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2~)
 - *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230명('24)
 - ** ▲사례관리비 지원 확대 : 월 40만 원 x 2,000명('23) → 월 40만 원 x 2,750명('24)

(3) 심리·정서 등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 원, 120명) 신설('23~)
 -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운영('21)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모집·운영으로 확대('22)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12월)

[4] 자립정보 제공

-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23.4월~)

[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23~)^{국토부}

[6] 진학·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의 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3월 법령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교육부}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교육부}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폐지('23~)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고용부}